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2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3. 6. 12.(월)

검 토 안 건	발 의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마포구행복나눔푸드마켓 2호점 민간위탁동의(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출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주민생활복지과)
- 제출일 : 2023. 5. 19.
- 회부일 : 2023. 5. 25. (의안번호 : 23-55)

2. 제출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 2호점의 현 수탁법인 해산 및 민간위탁 사무 해지 결정에 따라 푸드마켓 운영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며,
- 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 2호점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재위탁) 내용

1) 위탁기간 : 5년(2023. 8. 1. ~ 2028. 7. 31.)

※ 최초 민간위탁일 : 2010. 1. 1

2)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3)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 기부식품 등의 모집·관리 및 제공,
-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후원개발
- 그 밖에 기부식품 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등

4)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 마포구 신촌로 26길 우리마포복지관 지하1층
- 규 모 : 매장 166.81m²
-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2023년 예산 기준)

- 소요예산 : 134,576천원
- 산출근거

구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비고
계	134,576		
인건비	94,976	(53,654천원 × 1명) + (41,322천원 × 1명)	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준용
운영비	39,600	3,300천원 × 12개월 ※관리비, 차량유지비, 공과금, 사업비 등	

6) 민간위탁 추진일정(안)

-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23. 5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선정심사: 2023. 6월 ~ 7월
- 협약체결: 2023. 7월
- 위탁운영: 2023. 8월 ~ 2028. 7월(5년)

4. 검토의견

- 본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 2호점 민간위탁 사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2010. 1. 1.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사무로,
- 현 수탁법인인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 해산 및 민간위탁 사무 해지 결정과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내실 있는 추진과 관리를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사무의 위탁기간이 6년 경과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재계약)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본 재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 2호점 운영 사무의 재위탁은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며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람.

참고 자료

1.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기타 참고사항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2호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 인적·물적 현황

주소	면적	직원현황
마포구 신촌로26길 10, 우리마포복지관 지하 1층	매장 166.81㎡	2명

2.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2022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비고
계	130,833	126,905	
인건비	89,633	85,934	구비 100%
운영비 및 간판교체비 등	41,200	40,971	시비 800천원, 구비 40,400천원

3. 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

1) 현 수탁자명 :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

2) 위탁기간 : 2019. 1. 1. ~ 2023. 12. 31.

※ 현 수탁기관의 해산 및 민간위탁 사무 해지 결정에 따라 위탁기간 전 종료 예정

3) 운영내용(2022년)

회원수	모금실적	배분실적	연 이용인원
1,067명	837,439천원	516,113천원	8,047명

4.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점검일자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2.10.28.	- 기부식품 등 영수증 단가 장부가액 미적용 등 주의 2건 - 운영위원회 수당 지급 부적정 등 시정 4건	시정 완료

5. 사건·사고 현황 : 해당사항 없음

6. 성과평가결과서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평가주기 : 3년 / 평가일 : 2022. 8월)
- 평가근거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사업장에 대한 평가),
동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제7조의3
- 평가내용 : 전국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에 대한 운영성과 등 평가
- 평가결과 : A등급(90점 이상)

7.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재위탁(공개모집)

- 심의일시 : 2018. 12. 18.
- 심사결과 :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 위탁선정
- 위탁기간 : 2019. 1. 1. ~ 2023. 12. 31.